

예 산 총 칙

201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94,220,346 | 14,826,610 |
| 일반회계 | 441,398,136 | 13,241,944 |
| 특별회계 | 52,822,210 | 1,584,666 |
| 공기업특별회계 | 51,019,617 | 1,530,58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2,798,753 | 683,963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8,220,864 | 846,626 |
| 기타특별회계 | 1,802,593 | 54,078 |
| 지하수특별회계 | 280,000 | 8,400 |
|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| 1,437,467 | 43,124 |
|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| 85,126 | 2,554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289,295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,152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| | |
|---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3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|
|---|--|